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 2차 의회 운영 위원회 의

소통과 공존,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33호)

2024. 8.

의회 운영 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133호
- (발의자) 유인호,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발의일) 2024년 8월 16일
-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연구모임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기간을 정함 (안 제4조)
- 나. 의원연구모임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의원연구모임 등록취소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라.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기준 (안 제11조)
- 마.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수당 (안 제16조)
- 사. 연구모임 평가 및 시상 (안 제17조)
- 아. 연구활동 등 공개 (안 제18조)

III. 검토의견

1. 제정취지

- 본 제정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해 정책용역 심의회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평가 및 시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음.
- 또한 제정안은 그동안 규정 또는 규칙¹⁾으로 운영²⁾해 오던 것을 연구모임의 공정성·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모임의 지원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2012.10.10. (훈령)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2015.2.10. 제정

2) 의원 연구모임 최근 5년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7월
연구활동비	예 산	15,000	15,000	20,000	-	25,000	25,000	
	지 출	12,819	12,968	15,776	-	22,604		-
정책개발비	예 산	-	70,000	90,000	90,000	100,000	100,000	
	지 출	-	62,040	77,200	-	95,000		0
사업실적	연구모임 수	3개	3개	4개		5개	5개	
	참여의원	9명	9명	12명	-	15명	17명	

< 조례안 조문구성 및 배열 >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현행)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구성)	제3조 (연구모임 구성)
제4조 (심의위원회)	제4조 (등록 및 활동기간)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등록 등 심의)
제6조 (등록 등)	제6조 (등록증 교부 등)
제7조 (활동기간)	제7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제8조 (활동비 지원)	제8조 (의원 연구모임의 변경신청)
제9조 (활동비 집행)	제9조 (연구모임의 등록취소)
제10조 (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출 및 지원)
제11조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기준)
제12조 (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13조 (공개)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부칙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제척·회피)
	제15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16조 (수당)
	제17조 (평가 및 시상)
	제18조 (연구활동 등 공개)
	부칙

2. 주요내용

가. 연구모임 구성(안 제3조)

제3조(연구모임 구성) ① 의원 연구모임은 3명 이상의 의원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의원은 매년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의원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되 의원 임기 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④ 외부전문가가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 안 제3조의 연구모임 구성에 3명 이상의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과 동일한 요건을 취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을 9명으로 제한한 것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인당 연구모임 최대 가입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 것은 연구모임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 간 참여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나.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기간(안 제4조) 및 연구활동비 등 지원(안 제7조)

제4조 (등록 및 활동기간) ①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및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은 연구모임 등록신청에 있어 매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 규정³⁾ 을 두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3)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2023.11.24.)」

① (신청시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연도의 경우, 신청 시기에 예외규정을 두어 임기 첫 해 연구단체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다. 연구모임의 등록취소 (안 제9조)

제9조(연구모임의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4.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 안 제9조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모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⁴⁾ 의원 연구 활동의 책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연구모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한 것은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의원 연구활동비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 연구 활동의 책임성과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연구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안 제9조제2항은 연구모임이 승인된 연구주제 외의 연구활동을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그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강행으로 규정화함⁵⁾.

4) 17개 시도 중 12곳(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연구모임 등록취소에 대해 규정(2024.7.기준)

5) 현행: 임의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9조(활동비 집행)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이는 의원이 연구활동비를 정당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연구 활동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의원 연구활동비를 연구목적과 범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의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출 및 지원 (안 제10조)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출 및 지원) ① 의원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원 연구모임은 매년 2월 28 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 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 연구모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안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제출기한을 규정함에 있어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한 ^{제4조 제2항} 6) 한 후 약 1달간의 기간을 부여한 것은 구성원들이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심도 있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발굴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6) **제4조(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기간) ②** 제1항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및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및 구성·임기 (안 제13조)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명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정책연구용역 제반사항 심의를 위해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명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

- 현재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항 심의는 용역 선정 및 추진 과정에 있어 일부 의원의 부당 개입 및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심의 과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해 보임.
- 또한 자칫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에 있어, 외부위원의 참여는 전문적이며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로 의원의 연구 활동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안 제14조)

제14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통제 장치의 미흡으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2023.7.24.)⁷⁾하였다.

- 이에 연구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이해 충돌방지 제도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심의과정에서 위원과 해당 안건 사이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심의가 진행된다면 공정성 및 정책연구과제의 격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권익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체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中 이해충돌방지

❶ 문제점: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연구계획·정책연구용역 승인, 연구비 지급·조정, 활동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므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17개 시·도 모두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사익추구 통제 불능

❷ 개선방안: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사. 평가 및 시상 (안 제17조) 및 연구활동 등 공개 (안 제18조)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의원 연구모임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정산서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구활동의 주요성과
 2. 실제 연구기간 및 각종 회의 등 개최 실적
 3.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 · 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용 내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모임에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활동 등 공개)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 현황과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 안 제17조제3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모임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모임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연구활동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8)은 연구 활동 성과물에 대한 환류 및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함.

8) 권의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폐영향평가 개선권고안’ 中 공개

☞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활용도 제고 등이 확보되도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공개 권장

3.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대외적 효력을 가진 조례에 규정하면서 그 체계성을 높이고 연구활동보고서 및 정책연구 과제 결과물 등을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제안되어 그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의원 정책개발비(20명*5백만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높은 용역비로 해당 예산이 부족해져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수준 낮은 결과물 제출 등이 우려되므로, 역량 있는 외부 심의위원 위촉 및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참고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 (참고 2) ‘국민권익위원회’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 (참고 3)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모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연구모임 구성) ① 의원 연구모임은 3명 이상의 의원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의원은 매년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의원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되 의원 임기 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④ 외부전문가가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기간) ①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7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및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5조(등록 등 심의)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원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등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정산을 포함한다)

제6조(등록증 교부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7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 범위에서 모임 당 5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 ② 의원 연구모임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의원 연구모임 대표는 연구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원 연구모임의 변경신청) 의원 연구모임의 대표는 연구모임의 구성원이나 등록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연구모임의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4.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출 및 지원) ① 의원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원 연구모임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 연구모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안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기준) ① 제10조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심의 결과를 자체없이 각 의원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③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 유사·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실효성이 낮은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명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시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모임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및 시상) ① 의원 연구모임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비·정책연구용역비 정산서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구활동의 주요성과

2. 실제 연구기간 및 각종 회의 등 개최 실적
 3.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용 내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모임에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활동 등 공개)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 현황과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활동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정자료실에 비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연구모임명 :
2. 연구목적 :
3. 구성원(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대표의원				
간 사				
회 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대표의원		
연 구 내 용	과제명	
	목적	
연구모임 활동기간		~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모임 활 동 비	총 액	
	산출내역	<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제명	
연구모임명	
용역목적 및 필요성	
용역개요	<input type="radio"/> 용역기간 : <input type="radio"/> 용역비 : <input type="radio"/> 추진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주요 연구내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유사용역 사례	없음 (), 있음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모임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연구모임명	
대표의원	
연구목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단체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하였음.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모임 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의원 연구모임 변경신청서

연구모임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구성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등록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연구모임의 구성 및 등록내용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연구모임명	
대표의원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모임 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정산서

연구모임명		
대표의원		
연구과제명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액	
	사용액	
	지출내역	「세부지출내역 붙임」
정책연구 용역비	지원액	
	사용액	
	지출내역	「세부지출내역 붙임」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의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불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연구모임 활동비, 정책연구용역비, 수당, 상쾌제작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9조, 제18조 및 제1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구모임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토론회, 세미나 등), 정책연구용역비,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포상(상장, 상쾌 제작)
- 산출기준
 - 1) 활동비: 연구모임별 5,000천 원
 - 2) 정책연구용역비: 의원 1인당 5,000천 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3) 외부위원 수당: 외부위원 1인당 1회 100천 원(1회 2시간 참석기준)
 - 4) 상쾌 등 제작: 1개 연구모임 200천 원

나. 추계결과

- 소요비용

$$1) \text{연간추계}: 126,000\text{천원} = (5\text{개} \times 5,000\text{천원}) + (\text{의원 } 20\text{명} \times 5,000\text{천원}) + [(외부위원 } 4\text{명} \times 2\text{시간 } 100\text{천원}^*) \times 2\text{회 회의}^{**}] + 200\text{천원}(상쾌 제작)$$

*수당 지급기준: 1일 70천원(2시간 이상 참석 시 30천원 추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간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2회

정기회의 연 1회 (정책연구용역심사)

비정기회의 연 1회 (정책연구용역심사) ※안 제4조제2항 단서관련

2) 5년간 추계

(단위 : 천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630,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시비

3.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

[불임2] 관계법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시행 2023. 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연구모임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시정
및 교육행정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 사무처에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을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과
교수, 전문가 등을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1. 7. 3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되 의원 임기 내 한 차례만 가능하며, 간
사 1명을 둔다.
- ③ <삭제, 2021. 7. 30.>

제4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8. 30.)<개정, 2023. 6. 2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 8. 30.)<개정, 2023. 6. 2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모임 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모임 활동비의 배분·회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배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3. 6. 20.>
5. 연구모임 활동결과 및 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 6. 20.]
6. 그 밖에 연구모임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 6. 20.>

제6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위원회는 연구모임의 등록과 활동계획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0.)
- ⑤ 연구모임은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연구모임의 활동 등에 관한 사무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며 의회 운영 또는 교육, 학예 사무에 대한 연구모임은 그 사무의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기간)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모임 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 날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8조(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제6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모임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모임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 ② 연구모임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
-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 활동비 추가 지원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

제9조(활동비 집행) ① 연구모임에 지원하는 활동비는 다음 각 호에 사용 하며,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구모임 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2. 연구모임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모임 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연구모임 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였을 때
4.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모임 활동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모임이 연구과제 및 연구모임 활동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연구모임은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비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모임 활동비정산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모임의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시행을 위해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 대표자는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모임이 해당 연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12월 10일까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13조(공개)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의회 의정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가대상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등

□ 문제점

- ① (환수규정)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 시 환수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는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고, “부당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해 재정 누수를 방치할 우려
- ② (이해충돌)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연구계획·정책연구용역 승인, 연구비 지급·조정, 활동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므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17개 시·도 모두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사익추구 통제 불능
- ③ (외부전문가) 일반 연구활동 대비 예산 규모가 크고,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에 부패 개입 여지가 많아 용역과제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요구됨에도
- ④ (공개) 활동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을 제출받고 활동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는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제출 규정이 없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등 성과물의 환류 및 활용도 제고 미흡

□ 개선방안

- ① (환수규정)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부당 사용 제재를 위해
 -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는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임의규정인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 ② (이해충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 17개 시·도의회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 ③ (외부전문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 개선
- ④ (공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활용도 제고 등이 확보되도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공개

□ 주요사항

- ① (신청 시기)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연도의 경우, 신청 시기에 예외규정을 두어 임기 첫 해 연구단체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② (정책연구용역 심사강화) 외부전문가 참여 적극 권장, 금액·수행주체·연구내용 등의 측면에서 오·남용이 우려되어, 공정한 심사 필요성이 특별히 강화되는 경우*에는 심사 의무화 추진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수의계약 등
- ③ (인센티브 부여) 연구단체 활동실적 · 성과를 평가, 우수 연구단체에 포상 인센티브 부여
- ④ (전문가의 사전검토 및 참여) 연구용역의 타당성·효과성 등 강화를 위하여 산하 연구원 등의 사전 검토 활성화 필요 및 외부 전문가의 연구단체 참여 권장
- ⑤ (연구활동 관련 정보공개 확대) 누리집 등을 통한 연구활동 공개 확대 권장
- 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외부위원 비율 상향 필요, 장기적으로는 외부 민간위원으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연구 활동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 필요

* 현행 심의위원 1/3 이상 의원 → 개선 단계적으로 의원 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외부위원만 포함

※(행안부) 의원정책개발비 우수성과 공유·확산을 위하여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 「(가칭)정책연구」 부문* 신설 검토 중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경진대회 자격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24년 현황조사 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포함 예정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유의사항

- ① 지방의회 의원 개인은 지원 대상이 아님, 집행 시 연구용역 수행 기관의 명의로 집행해야 함
※연구용역과 동일 주제에 대한 공청회·세미나 등이라 하더라도, 의원 연구단체나 지방의회의원 개인이 개최한다면 해당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
- ②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집행부 공무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 등은 연구용역 수행자가 될 수 없음
- ③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원 개인 용도의 연구용역은 수행 불가
- ④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사전 반영된 경비(자문회의·토론회·공청회 등 회의비, 유인물비 등)은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 가능,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연구용역비 금액 일체를 외부 연구용역 업체에 지급해야 함
- ⑤ 계약 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편성한도(의원 정수×500만 원 이내)를 초과하여 용역계약을 할 수 없음